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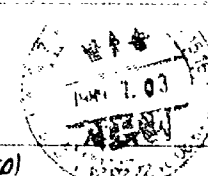
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공위 3014-가사 01 3014-가사	(전화: 771-6411)	시행장 특민취급	1989. 9. 6
보존기간	영구 · 준영구, 10. 5. 3. 1.			
수신처 보존기간				
시행일자	89. 9. 3			
보조기관	행정부처장 공위과장 공위계장			
기안책임자	최동윤	협조기관	행정동계장 공위담당관	문서송배  발신일
성수 수신 합	각안 1장	발신 번호의	시 장	
제목	이권이 공위 조성 계획 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 (공위 제1안) 개구 결정.			
1. 공위 제1 이권이 공위에 대한 일부 시설을 보완하여 시의 이용상 편익을 증진키 위해 공위 조성 계획을 일부 변경 운영이 마땅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2. 도시 공원법 제4조,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6조, 같은법 제13조와 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위 조성 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지적 승인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4항의 제정에 따라 공사 착수 합니다.				

1989
9. 3

정우 : 헌정헌법개정위원회 결.

제2안) 2시(안) 결정

제3안)

두신 : 정우제 강안

홍준 : 정우 양양안

제옥 : 헌정 개정 의회

1. 서울특별시 2시 제 6호 (89. 6.)의
내용을 헌법에 개정 의회 하에 공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정우 : 2시를 서울 정우 결.

제4안)

두신 : 건설부 강안.

홍준 : 복지 후원 바깥

제옥 : 결 음.

1. 동등 제1안이 후원에 대한 공성 계획을
결정나 같이 헌정 개정하고 직접 승인 하였기 관계 등
정우 유 강나.

정우 : 2시를 헌정 개정 위원회 결.

제5안)

수신 : 수원구청장

발신 : 수원복지재단

제목 : 갈 등.

1. 공복 20114-388호 (89. 6. 23) 와 관련임.

2. 공복 제1이런이 공원 조성 계획후 변경이 같이

일부 변경 결정하고 지적 승인 하달이 통곡이나 공원 조성에
안전을 기하기 하달.

첨부 : 2A원 사본 및 승인 수면 각 1부 각.

고 시 (안)

2016. 7. 16
16 7:15
160
[Signature]

서울특별시 고시 제 327 호

어린이공원 조성 계획 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

1. 공농 제 1어린이공원에 대한 조성 계획을 도시공원법 제 4조와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 및 제 7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 13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 12조 4항 및 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원과 및 노원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1989. 7. 3.

서울특별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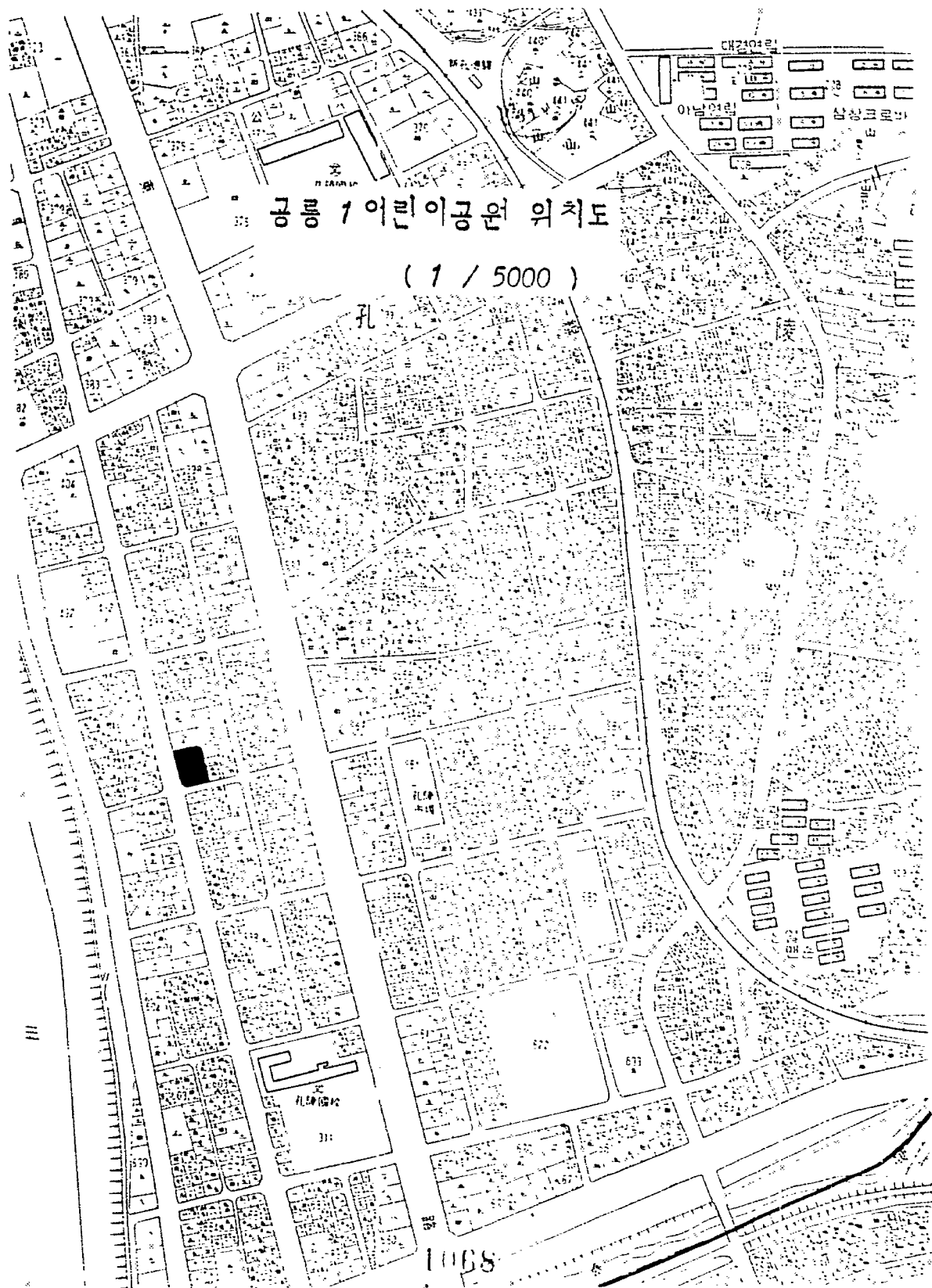
가. 어린이공원 조성 계획 변경 결정 및 시설 내역 조서

- 공 원 명 : 공농 제 1어린이공원
- 위 치 : 노원구 공농1동 569-21

관정수위상

시설구분	변경구분	시설내역	면적 (m ²)	비고
계	당초		992.1	건폐율 : 4.6%
	변경		992.1	시설율 : 33.4%
유희시설	당초	그네2조(4인용), 미끄럼틀2조 정글집3조, 시소2조	194	
	변경	변경 없음	194	
휴양시설	당초	의자 8조	15	
	변경	의자 8조, 노인정1동(46.08m ²)	61.08	
운동시설	당초	철봉 1조 (3인용)	1.5	
	변경	변경 없음	1.5	
관리시설	당초	웬스 B형 37m	75.18	
	변경	변경 없음	75.18	
기타	당초	공지 및 녹지	706.42	
	변경	공지 및 녹지	660.34	

나. 어린이공원 조성 계획 변경 지적 승인 도면 : 서울특별시
공원과 및 노원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있는 도면과 같음.



공룡 1 어린이공원 위치도

(1 / 5000)

1068